

정 관

2021. 3. 24.

SK 바이오팜 주식회사

정관제정 2011. 4. 1.

정관개정	2012. 3. 27.	제 1 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15. 3. 27.	제 2 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16. 3. 30.	제 3 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17. 3. 30.	제 4 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19. 8. 27.	제 5 차	임시주주총회
정관개정	2019. 12. 19.	제 6 차	임시주주총회
정관개정	2020. 3. 31.	제 7 차	정기주주총회
정관개정	2021. 3. 24.	제 8 차	정기주주총회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20.3.31. 전문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회사명은 SK 바이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말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바이오팜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Biopharmaceuticals Co., Ltd.로 표기한다.

제 1 조의 2 (지배구조현장)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의지 및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현장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2021. 3. 24. 본조신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 개발, 생산, 매매, 투자사업
2.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의약중간체, 의료기기,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매매 및 수출입사업
3. 의약 및 생명과학 관련 기술용역 및 연구용역사업
4. 지식, 정보, 권리 등 무형자산의 라이선스, 매매 및 용역사업
5.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및 시설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무지원 서비스 사업
6. 신기술 또는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8.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사업
9.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사업
10.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 사업
11.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사업
12.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을 포함한 각종 판매 유통사업

13. 환경관련 사업

14.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 투자 및 부대사업

(2019. 8. 27. 본조개정)

제 3 조 (본점 및 지점)

①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점을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2016. 3. 30. 본조개정)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b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300,000,000)주로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40,00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9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이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름)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 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우선배당금 이외에는 추가로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⑦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위 제 2 항 내지 제 7 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등)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12. 19. 본조개정)

제 11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후를 위해 그 제후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삭 제>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의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이사주조합원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의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의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⑥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해외영업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제 1 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2 의 1.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 수의 100 분의 9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3 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6 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 1 항의 결의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 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 12 조 제 8 항을 준용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2021. 3. 24. 본조개정)

제 14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2021. 3. 24. 본조개정)

제 15 조 (주주·등록질권자의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 14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10 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10 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2019. 12. 19. 본조개정)

제 16 조 (주권의 재발행)

구주권에 갈음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제 10 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구주권을 분실하였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2. 주권 손상의 경우에는 그 주권. 단, 식별 불능토록 훼손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식의 분할, 병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2019. 12. 19. 본조개정)

제 17 조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27. 본조신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전체 사채의 액면총액이 1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 1 항에 규정된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2. 3. 27. 본항개정)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⑥ 제 14 조 내지 제 16 조는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전체 사채의 액면총액이 1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2. 3. 27. 본항개정)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⑥ 제 14 조 내지 제 16 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19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19 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8. 27. 본조신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0 조 (구분 및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지역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24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29 조 (결의방법)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1 조 (이사)

-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0 인 이하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식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1 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정한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32 조 (이사의 임기와 결원)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에 만료된다.
- ② 이사에 결원(상법 및 본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 이사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3 조 (이사의 직무)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④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 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신설)

제 33 조의 3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019. 8. 27. 본조신설)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운영)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5 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된다.
- ② 이사회 소집통보는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의 3 일 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6 조 (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사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37 조의 2(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3.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4 조 내지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9. 8. 27. 본조신설)

제 5 장의 2 감사위원회

제 38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40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41 조 <삭제>

(2019. 8. 27. 본조삭제)

제 6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9. 8. 27. 본조신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2012. 3. 27. 본조개정)

제 4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제 1 항의 이익배당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여도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021. 3. 24. 본조개정)

제 46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7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⑤ 제 45 조 제 4 항은 중간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8. 27. 본조개정)

제 47 조 (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 (2012. 3. 27. 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제 7 장 보 칙

제 48 조 (세칙제정)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정관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9 조 (적용범위)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0 조 (이사 아닌 임원의 보수·퇴직금)

이사 아닌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보수·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9. 8. 27. 본조개정)

부 칙 (2011. 4. 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

이 회사는 SK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 동 분할로 인하여 이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1 년 3 월 11 일자 SK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 조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 4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발기인)

이 회사는 SK 주식회사에서 Life Science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발기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분할 전 회사의 명칭과 주소)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분할 전 S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부 칙 (2012. 3. 2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3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2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 8.27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 조, 제 14 조 제 3 항, 제 14 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제 18 조의 2 제 6 항, 제 19 조 제 6 항, 제 19 조의 2, 제 19 조의 3 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3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